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71306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서○○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 박○○, 김○○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3. 3. 18.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석유 도·소매업,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10. 21. 설립된 회사이고, D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명목상 석유 도·소매업,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12. 16. 설립된 회사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4)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2013. 5.경,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위 특수목적법인은 'K ○차'라고만 부른다)는 2013. 12. 6. 각 피고 회사가 경유무역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주행세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경유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국세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등과 지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세인 자동차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경유의 경우 리터당 97.5원, 이하 '주행세'라 한다) 등이 있는데, 이 중 국세는 세관에 납부를 완료하여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경유를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지방세인 주행세는 국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세구역에서 경유를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주행세와 관련된 과세실적 서류를 받아 징수를 하려고 할 때 이미 경유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주행세를 체납하더라도 경유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1)]

다. 피고 회사가 이전에 추진한 경유무역금융사업의 경과

피고 회사는 피고 A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2013. 5.경 G, H를 설립하여, 2013. 5. 경부터 2013. 11.경까지 G, H를 통해 조성한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D이 영업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에 투자를 하고,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 3개 수입사를 통해 경유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유무역금융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사업이 종료된 무렵까지 위 수입사들이 체납한 주행세 합계액은 3,466,485,8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진행과정

1) 피고 A은 위 경유무역금융사업이 마무리될 무렵 D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세포탈 범행(이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이라 한다)을 계획·설계하였다.

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10. 15. 지방세법 제137조의2가 신설되어 특별징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주행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경유 등 수입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가)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를 내세워 경유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D이 새로 설립한 C에 판매 형태로 이전하여, C가 해당 경유를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입가격에 통관비용, 주행세 등 관련 세금, 부대비용 등을 합친 가격, 즉 아예 이윤을 볼 수 없는 가격(이하 '최소 공급원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에 주행세가 부과될 것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2) 피고 A 등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실행하였다.

가) 피고 A은 정상적인 경유수입 사업인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하여 2013.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A 등은 그 무렵 I, J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I, J는 C와 사이에 수익권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투자금을 C에 지급하기로 하고 경유수입 사업의 수익권을 부여받았으며, 피고 회사에 자금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 A 등은 2013. 12. 12.경 명목상의 수입회사 역할을 할 E 명의로 경유수입 중개사와 사이에 경유 수입 가격의 협상을 마친 후 2013. 12. 16. 실제로 E를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는 C와 사이에 수입된 경유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C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A 등은 2013. 12. 24.부터 2014. 3. 4.까지 E 명의로 3항차에 걸쳐 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계 25,548,200리터의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를 ○○항을 통하여 수입하여 위 경유를 C에 이전하고, 실제 통관, 품질검사, 이전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 A과 C가 수행하였으며 그 비용은 위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다만 외형상으로는 E가 C에 최소 공급원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E가 C로부터 선지급금을 전달받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C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경유를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즉 1항차의 경우 최소 공급원가는 리터 당 약 1,615원인데, C는 이를 E로부터 리터당 1,485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시중에 리터 당 약 1,514원에 판매하였고, 2항차의 경우 최소 공급원가는 리터 당 약 1,581원인데 리터당 1,48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리터 당 약 1,516원에 시중에 판매하였다. 피고 A 등은 C가 이 사건 경유 1항차, 2항차 판매로 얻은 수익 14억 원을 운영비 등 명목으로 C에 합계 6억 7,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마) E와 C는 이 사건 경유에 관한 주행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광역시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E를 납세의무자로 파악하여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E에 대해 주행세 합계 2,490,949,480원과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E는 급조된 이른바 바지회사로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2014. 4.경 주행세 체납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고, C는 2014. 9. 18. 폐업하였다.

마. 피고 A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 A과 D은 공모하여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E를 내세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행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E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등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5년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230, 2016노168(병합)]. 위 판결에서 E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주체는 C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선행 소송의 경과

1) ◯◯광역시는 2017. 3.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광역시에게 이 사건 포탈세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위 포탈세액 전액인 2,490,949,4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은 ◯◯광역시의 조정신청에 불응(불출석)하여 결국 위 조정신청은 2017. 5. 15. 불성립되었고,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소송이행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조정신청으로 시작된 ◯◯광역시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2) ◯◯광역시가 원고가 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8. 10. 25. 피고 A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모두 성립하고, ◯◯광역시가 징수하지 못한 주행세 합계 2,490,949,480원은 피고 A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490,94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인용[2]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2489), 피고들 및 ◯◯광역시는 이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다.

2) 원고는 E에 부과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과 관련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으나, 위 가산세 등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하여 포탈된 주행세 그 자체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주행세가 제때 신고·납부되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가산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3) 피고 회사는 2019. 1. 23.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 '조세채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조세채권의 내용이 되는 조세를 세입으로 삼을 수 있는 해당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한정되고, 주행세를 징수하여 이를 과세주체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역시는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5. 16. '○○광역시는 E 명의로 수입된 경유에 관한 주행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중 ○○광역시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적법할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이 사건 원고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담당자의 지위에서 이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19. 7. 19. '○○광역시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기왕에 ○○광역시가 행한 모든 소송상의 행위를 추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들 명의의 소송담당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9. 10. 30. 피고 A이 ○○광역시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및 ○○광역시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A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8나58441), ○○광역시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 상고심 법원은 2021. 10. 28. 피고 A의 불법행위와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한 위 항소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는데(대법원 2019다293814), 관련 민사사건의 상고심은 그 판결에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부과할 수 있는 주행세의 범위 및 이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는 내용을 부기하여 두었다.

5) ◯◯광역시는 2022. 5. 16. 관련 민사사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면서 주위적으로 E 명의로 수입된 경유에 관한 주행세 2,490,949,48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불가분채권 또는 (부진정)연대채권임을 전제로 위 금액 전액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광역시가 원고들의 소송담당자로서 위 금액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

관련 민사사건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8. 17. ① 피고 A 등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광역시의 손해액은 ◯◯광역시에 귀속되는 주행세 상당액인 55,797,268원(주행세 2,490,949,480원 × ◯◯광역시 귀속 안분 세액 2.24%, 원 미만 버림)에 한한다고 보아 ◯◯광역시의 주위적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광역시장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정소송담당 주장은 이유 없고, 임의적 소송담당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적 소송담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21나57783), 이에 대해 ◯◯광역시가 상고하고, 피고 회사가 부대상고를 하였으나, 2022. 12.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2다272497)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의 불법행위책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E 명의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 A 등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C에 대한 주행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주행세 상당액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경유수입 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경유의 판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목상의 수입회사로서 자력이 없는 E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수익을 실현·배분하였다.

② 일반적인 경유수입 사업이라면 최소 공급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주행세를 포탈하여 시중 판매가격을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 등의 범행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최소 공급원가 중 주행세가 차지하는 비중, C가 시중에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있을 뿐이지, E가 C에 공급하는 가격은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③ 피고 A 등이 위와 같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구조에 있어, E는 단지 주행세 납세의무자로 내세울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다. 피고 A 등은 C가 진정한 수입사인 것을 감추기 위해 E가 수입하여 C에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두면서, 마치 E가 C에 특정 가격에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따라서 E가 C에 공급한 가격이 C의 판매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C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볼 때, C는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판매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C가 얻은 이익은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범죄이익일 뿐이다.

④ 피고 A 등은 주행세 포탈만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들 및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E는 물론 C에도 주행세를 납부할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 A 등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이익을 실현하였다.

⑤ 설령 원고들이 C의 폐업 전에 C를 상대로 주행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행세를 징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 A 등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를 설계하면서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경유 수입 직전에 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신설회사이고, C가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이익일 뿐이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피고 A 등이 설계한대로 투자자 등에게 배분되었다. 달리 C가 주행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다.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살피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당시 피고 회사의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경유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및 투자자들을 위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기획·실행한 사실, 이 사건 경유의 수입 사업은 피고 회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받았고, 피고 회사가 I, J를 설립하여 조성한 투자금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사업의 투자계약에 관한 업무와 자금의 집행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서 각 항차별로 업무위탁수수료와 투자수익금 등을 취득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조세포탈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등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경유에 관하여 부과·징수하였어야 할 주행세 상당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경유에 관하여 부과·징수되었어야 할 주행세는 2,490,949,480원이고, 그중 원고들에게 귀속될 안분 세액 비율은 별지3 표의 '안분비율 기재와 같으며, 이를 원고별로 각 계산한 액수는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4. 4. 9.이다. 이 사건 소는 2023. 6.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배분하여 원고들의 주행세 부과· 징수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는 2014. 4. 9.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호증의4, 부산고등법원 2021나57783 판결 23쪽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23. 6. 23.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나. 원고들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광역시가 원고들의 소송담당자로서 2017. 3. 24.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관련 민사사건 계속 중인 2019. 7. 19. 원고들은 ◯◯광역시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광역시가 기왕에 한 모든 소송상의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광역시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한 2017. 3. 24.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광역시가 원고들 소송담당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2. 12. 29.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역시가 최초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2017. 3. 24.로 소급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한 ◯◯광역시가 원고들을 위한 법정소송담당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채권을 소송상 수행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 때(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때)에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광역시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송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원인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그러한 청구원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때에 발생하는데(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광역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주장하다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9. 5. 16.에 이르러서야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소송담당자의 지위에서 행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위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광역시가 이 사건 원고들 소송담당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2019. 5. 16.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전○○

판사 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별지1]

원고 목록

1. ○○특별시
2. ○○광역시
3. ○○광역시 ○○군
4. ○○광역시
5. ○○군
6. ○○광역시
7. ○○군
8. ○○군
9. ○○광역시
10. ○○광역시
11. ○○광역시 ○○군
12. ○○특별자치시
13. ○○시
14. ○○시
15. ○○○시
16. ○○시
17. ○○시
18.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19. ○○시

20. ○○○시

21. ○○시

22. ○○시

23. ○○시

24. ○○시

25. ○○○시

26. ○○시

27. ○○시

28. ○○시

29. ○○시

30. ○○시

31. ○○시

32. ○○시

33. ○○시

34. ○○시

35. ○○시

36. ○○시

37. ○○시

38. ○○시

39.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40. ○○시

41. ○○군

42. ○○군

43. ○○군

44. ○○시

45. ○○시

46. ○○시

47. ○○시

48. ○○시

49. ○○시

50. ○○군

51. ○○군

52. ○○군

53. ○○군

54. ○○군

55. ○○군

56. ○○군

57. ○○군

58. ○○군

59. ○○군

60. ○○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61. ○○시

62. ○○시

63. ○○시

64. ○○군

65. ○○군

66. ○○군

67. ○○군

68. ○○군

69. ○○군

70. ○○군

71. ○○군

72. ○○시

73. ○○시

74. ○○시

75. ○○시

76. ○○시

77. ○○시

78. ○○시

79. ○○군

80. ○○군

81. ○○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82. ○○군

83. ○○군

84. ○○군

85. ○○군

86. ○○시

87. ○○시

88. ○○시

89. ○○시

90. ○○시

91. ○○시

92. ○○시

93. ○○군

94. ○○군

95. ○○군

96. ○○군

97. ○○군

98. ○○군

99. ○○군

100. ○○군

101. ○○군

102.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103. ○○시

104. ○○시

105. ○○시

106. ○○시

107. ○○시

108. ○○시

109. ○○시

110. ○○시

111. ○○시

112. ○○군

113. ○○군

114. ○○군

115. ○○군

116. ○○군

117. ○○군

118. ○○군

119. ○○군

120. ○○군

121. ○○군

122. ○○군

123. ○○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124. ○○군

125. ○○시

126. ○○시

127. ○○시

128. ○○시

129. ○○시

130. ○○시

131. ○○시

132. ○○시

133. ○○군

134. ○○군

135. ○○군

136. ○○군

137. ○○군

138. ○○군

139. ○○군

140. ○○군

141. ○○군

142. ○○군

143. ○○특별자치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별지2]

순번	원고	청구금액(원)
1	○○특별시	437,792,000
2	○○광역시	160,764,588
3	○○군	5,443,749
4	○○광역시	128,422,791
5	○○군	9,638,621
6	○○광역시	123,163,351
7	○○군	3,048,470
8	○○군	842,661
9	○○광역시	73,498,723
10	○○광역시	75,722,964
11	○○군	12,319,210
12	○○특별자치시	4,753,696
13	○○시	54,210,423
14	○○시	50,054,625
15	○○○시	16,867,218
16	○○시	28,698,378
17	○○시	35,874,631
18	○○시	13,798,843
19	○○시	23,408,711
20	○○○시	3,748,844
21	○○시	34,632,389
22	○○시	49,134,555
23	○○시	3,760,64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24	○○시	8,420,707
25	○○○시	28,014,223
26	○○시	9,967,428
27	○○시	21,062,090
28	○○시	13,549,657
29	○○시	7,673,150
30	○○시	7,257,349
31	○○시	55,741,662
32	○○시	19,303,045
33	○○시	11,075,493
34	○○시	9,623,139
35	○○시	15,266,679
36	○○시	32,848,278
37	○○시	15,814,445
38	○○시	9,549,415
39	○○시	8,021,863
40	○○시	5,660,497
41	○○군	1,941,879
42	○○군	2,900,286
43	○○군	5,490,195
44	○○시	15,980,323
45	○○시	10,490,128
46	○○시	4,351,903
47	○○시	2,379,060
48	○○시	3,650,79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49	○○시	3,176,749
50	○○군	3,100,077
51	○○군	2,028,136
52	○○군	1,839,403
53	○○군	2,164,524
54	○○군	1,881,426
55	○○군	2,039,931
56	○○군	1,080,788
57	○○군	959,881
58	○○군	1,513,545
59	○○군	1,254,038
60	○○군	1,371,259
61	○○시	41,795,372
62	○○시	10,073,590
63	○○시	6,398,470
64	○○군	1,306,382
65	○○군	2,241,197
66	○○군	1,943,354
67	○○군	1,640,350
68	○○군	3,523,987
69	○○군	1,610,123
70	○○군	5,039,744
71	○○군	1,320,389
72	○○시	32,021,837
73	○○시	5,760,02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74	○○시	4,719,784
75	○○시	15,961,892
76	○○시	8,739,930
77	○○시	5,448,173
78	○○시	2,411,498
79	○○군	2,574,427
80	○○군	2,964,425
81	○○군	2,533,142
82	○○군	1,248,140
83	○○군	3,893,342
84	○○군	4,050,374
85	○○군	2,940,096
86	○○시	8,969,948
87	○○시	33,811,846
88	○○시	14,186,629
89	○○시	14,385,682
90	○○시	4,876,815
91	○○시	3,391,285
92	○○시	4,059,220
93	○○군	4,322,414
94	○○군	1,090,372
95	○○군	981,998
96	○○군	858,142
97	○○군	1,172,942
98	○○군	1,139,02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99	○○군	2,356,206
100	○○군	2,430,666
101	○○군	3,010,134
102	○○시	28,800,854
103	○○시	13,962,509
104	○○시	5,956,128
105	○○시	7,635,551
106	○○시	22,515,181
107	○○시	4,910,728
108	○○시	5,091,350
109	○○시	4,134,418
110	○○시	3,039,623
111	○○시	12,599,360
112	○○군	1,096,270
113	○○군	2,226,452
114	○○군	1,099,219
115	○○군	695,951
116	○○군	1,562,203
117	○○군	1,971,369
118	○○군	1,879,214
119	○○군	2,242,671
120	○○군	6,575,406
121	○○군	1,804,016
122	○○군	1,251,089
123	○○군	2,211,70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124	○○군	389,998
125	○○시	91,605,235
126	○○시	15,977,374
127	○○시	5,941,383
128	○○시	5,237,323
129	○○시	28,113,750
130	○○시	4,812,675
131	○○시	12,504,994
132	○○시	12,974,613
133	○○군	1,144,190
134	○○군	7,811,013
135	○○군	2,954,841
136	○○군	2,378,323
137	○○군	1,580,634
138	○○군	2,110,706
139	○○군	1,486,267
140	○○군	4,932,108
141	○○군	2,494,806
142	○○군	1,829,819
143	○○특별자치도	27,961,14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별지3]

순번	원고	안분비율
1	○○특별시	17.5753062728%
2	○○광역시	6.4539481687%
3	○○군	0.2185411314%
4	○○광역시	5.1555758917%
5	○○군	0.3869456598%
6	○○광역시	4.9444339048%
7	○○군	0.1223818497%
8	○○군	0.0338288886%
9	○○광역시	2.9506308363%
10	○○광역시	3.0399237119%
11	○○군	0.4945588171%
12	○○특별자치시	0.1908387345%
13	○○시	2.1762955680%
14	○○시	2.0094596582%
15	○○○시	0.6771401064%
16	○○시	1.1521059889%
17	○○시	1.4401990784%
18	○○시	0.5539591490%
19	○○시	0.9397505423%
20	○○○시	0.1504985988%
21	○○시	1.3903288446%
22	○○시	1.9725231290%
23	○○시	0.150972144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24	○○시	0.3380521131%
25	○○○시	1.1246403646%
26	○○시	0.4001457335%
27	○○시	0.8455446347%
28	○○시	0.5439555057%
29	○○시	0.3080411830%
30	○○시	0.2913487131%
31	○○시	2.2377676604%
32	○○시	0.7749271998%
33	○○시	0.4446293902%
34	○○시	0.3863241317%
35	○○시	0.6128859357%
36	○○시	1.3187051260%
37	○○시	0.6348761931%
38	○○시	0.3833644739%
39	○○시	0.3220403644%
40	○○시	0.2272425253%
41	○○군	0.0779573863%
42	○○군	0.1164329376%
43	○○군	0.2204057158%
44	○○시	0.6415354231%
45	○○시	0.4211297073%
46	○○시	0.1747085995%
47	○○시	0.0955081570%
48	○○시	0.146562253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49	○○시	0.1275316543%
50	○○군	0.1244536102%
51	○○군	0.0814201859%
52	○○군	0.0738434619%
53	○○군	0.0868955528%
54	○○군	0.0755304669%
55	○○군	0.0818937311%
56	○○군	0.0433885832%
57	○○군	0.0385347445%
58	○○군	0.0607617745%
59	○○군	0.0503437791%
60	○○군	0.0550496349%
61	○○시	1.6778891958%
62	○○시	0.4044076408%
63	○○시	0.2568686998%
64	○○군	0.0524451361%
65	○○군	0.0899735969%
66	○○군	0.0780165794%
67	○○군	0.0658523859%
68	○○군	0.1414716425%
69	○○군	0.0646389262%
70	○○군	0.2023222067%
71	○○군	0.0530074711%
72	○○시	1.2855273622%
73	○○시	0.231238063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74	○○시	0.1894772919%
75	○○시	0.6407955087%
76	○○시	0.3508674313%
77	○○시	0.2187187109%
78	○○시	0.0968104064%
79	○○군	0.1033512501%
80	○○군	0.1190078398%
81	○○군	0.1016938418%
82	○○군	0.0501070064%
83	○○군	0.1562995280%
84	○○군	0.1626035991%
85	○○군	0.1180311528%
86	○○시	0.3601015636%
87	○○시	1.3573878534%
88	○○시	0.5695269490%
89	○○시	0.5775180251%
90	○○시	0.1957813630%
91	○○시	0.1361442585%
92	○○시	0.1629587581%
93	○○군	0.1735247364%
94	○○군	0.0437733388%
95	○○군	0.0394226418%
96	○○군	0.0344504167%
97	○○군	0.0470881555%
98	○○군	0.045726712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99	○○군	0.0945906630%
100	○○군	0.0975799174%
101	○○군	0.1208428277%
102	○○시	1.1562199132%
103	○○시	0.5605295893%
104	○○시	0.2391107531%
105	○○시	0.3065317576%
106	○○시	0.9038794898%
107	○○시	0.1971428056%
108	○○시	0.2043939672%
109	○○시	0.1659776090%
110	○○시	0.1220266908%
111	○○시	0.5058055167%
112	○○군	0.0440101114%
113	○○군	0.0893816653%
114	○○군	0.0441284977%
115	○○군	0.0279391696%
116	○○군	0.0627151486%
117	○○군	0.0791412494%
118	○○군	0.0754416771%
119	○○군	0.0900327900%
120	○○군	0.2639718785%
121	○○군	0.0724228262%
122	○○군	0.0502253927%
123	○○군	0.088789733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29

124	○○군	0.0156565897%
125	○○시	3.6775227901%
126	○○시	0.6414170368%
127	○○시	0.2385188215%
128	○○시	0.2102540896%
129	○○시	1.1286359026%
130	○○시	0.1932064607%
131	○○시	0.5020171548%
132	○○시	0.5208701749%
133	○○군	0.0459338889%
134	○○군	0.3135757431%
135	○○군	0.1186230843%
136	○○군	0.0954785604%
137	○○군	0.0634550631%
138	○○군	0.0847350026%
139	○○군	0.0596667011%
140	○○군	0.1980011063%
141	○○군	0.1001548197%
142	○○군	0.0734587064%
143	○○특별자치도	1.1225094110%